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콘텐츠 다양성 증진 및 장애인 접근성 기술 지원 근거 마련 >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9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콘텐츠 다양성 증진 및 장애인 접근성 기술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7.

다. 회 부 일 : 2026.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콘텐츠 다양성 증진 및 장애인 접근성 기술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개정안은 ①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②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의2. (생략) <u><신설></u> 7. ~ 11. (생략) ④ (생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u> <u>에 관한 사항</u> 7. ~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 위한 특별지원) (생략) <u><신설></u>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 위한 특별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현행	개정안
<신설>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의3(콘텐츠 다양성 증진 지원)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5조¹⁾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의2²⁾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장애인 외에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 계층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급변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제6호의3 신설),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6조의2제2항·제3항 신설),

③ 또한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지원과 접근성 기술 개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포용적 디지털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가 2023년 414,578명으로 2010년(221,548명) 대비 193,030명(87.1%) 증가하였고, 총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도 2025년 20.3%로 2010년(10.8%) 대비 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표]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07~’15)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연도 (’16~)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23	414,578	88,618	325,960	180,072	40,092	139,980	234,506	48,526		185,980		
2022	399,581	85,367	314,214	175,756	39,174	136,582	223,825	46,193		177,632		
2021	385,512	80,287	305,225	174,632	36,820	137,812	210,880	43,467		167,413		
2020	372,884	76,555	296,329	173,756	35,679	138,077	199,128	40,876		158,252		
2019	359,610	72,312	287,298	173,882	34,628	139,254	185,728	37,684		148,044		
2018	343,797	69,515	274,282	166,882	32,858	134,024	176,915	36,657		140,258		
2017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2015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93,249	10,308	82,941	56,502	21,081	35,421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39,825	212,939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사유: 기타사유 국적취득의 경우도 대부분 결혼귀화자라 구분 실익이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자·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표]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	3,395	7.2	10.1	34.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5	51,685	10,514	20.3	29.3	199.9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5	50,825	15,208	29.9	47.7	406.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자료: 통계청(現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2025 고령자 통계”에서 재인용.

다만, 안 제26조의2제2항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한 및 업무위탁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³⁾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법률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만을 콘텐츠 다양성 증진의 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그 외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정부에게 지원사업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업의 위탁 주체도 정부로 규정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